

의성군의회 공고 제2022-3호

「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
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의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의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3일

의성군의회의장

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1. 제정이유

○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(안 제3조)
- 다.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(안 제4조)
- 라. 관계법령(안 제5조)

3. 의견 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4일까지 의성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화번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【우편번호 : 37337】

의회사무과 (☎ 054-830-6450)

의성군 조례 제 호

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의용소방대”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의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
2.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
3.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·훈련에 필요한 경비
4.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
5.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
6.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
7.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

제4조(포상)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「의성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관계법령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